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4,575,851	24,137,276
일반회계	732,886,704	21,986,601
특별회계	71,689,147	2,150,674
공기업특별회계	54,156,429	1,624,693
상수도사업	21,987,919	659,638
하수도사업	32,168,510	965,055
기타특별회계	17,532,718	525,982
의료급여기금	2,366,906	71,007
농공지구조성	3,658,550	109,757
중소기업육성자금	5,780,000	173,400
수질개선관리	3,900,251	117,0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14,842	39,445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40,980	7,2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1,189	8,13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374,981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